



## 2013귀속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수원대학교  
THE UNIVERSITY OF SUWON



수원과학대학교  
SUWON SCIENCE COLLEGE

2014년 1월

## I.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II.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III. 소득공제신고서 화면구성

IV.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방법

V. Q & A

#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구분	2012년	2013년
월세 소득공제 확대	<input type="checkbox"/> 공제금액 -. 월세 지출액의 40%	<input type="checkbox"/> 공제금액 -. 월세 지출액의 50%
오피스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포함	<input type="checkbox"/>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추가>	<input type="checkbox"/>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13.08.13 이후 지급분)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공제금액 : 연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 초,중학생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제외)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교육비 -. 초,중,고,어린이집,유치원, 학원,체육시설(취학전 아동) 급식비 -. 초,중,고,어린이집,유치원, 학원,체육시설(취학전 아동)의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구분	2012년	2013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 신용카드, 연금영수증, 학원지로영수증 :20% -. 직불(체크), 선불카드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추가>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추가 100만원 -. <추가>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 신용카드(학원지로영수증 삭제):15% -. 현금영수증, 직불(체크), 선불카드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대중교통 이용분 : 30%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 이용분 : 추가 100만원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변경	<input type="checkbox"/> '사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input type="checkbox"/> '사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3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	<서식 추가>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추가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 -. 회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공제 명세서를 포함하여 국세청에 제출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종료	<input type="checkbox"/>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납입액 40% 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액 5% 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 적용기한(2012.12.31) 종료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구분	2012년	2013년
<p>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p>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 공제한도 : 2천5백만원                      -.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출자,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 한도제외 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퇴직연금, 연금저축),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장애인관련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목돈안드는 전세이자상환액</p>
<p>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및 기한연장</p>	<p><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 투자금액 10%                      -.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직접투자: 투자금액의 20%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40%</p>	<p><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 투자금액 10%                      -.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직접투자: 투자금액의 30%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40%</p>

#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구분	2012년	2013년
<p>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신설</p>	<p>&lt;신 설&gt;</p>	<p>□ 목돈 안드는 전세 과세특례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인)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li> <li>- (임차인)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li> <li>- (대출한도)3천만원(수도권5천만원)</li> <li>- (대출이자) 주택임차인이 상환</li> </ul> <p>□ 공제금액 : 임대인이 이자상환액의 40% 공제(연 300만원 한도), 13.08.13이후 차입 또는 상환하는 분부터</p>

## I.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II.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III. 소득공제신고서 화면구성

## IV.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V. Q & A

#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 연금계좌)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표준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등,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목돈안드는전세이자상환액)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밖의소득공제+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x)기본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I.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II.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III. 소득공제신고서 화면구성

IV.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방법

V. Q & A

# 소득공제 신고서 화면구성

- ❖ 소득공제 신고서는 ①소득자인적사항, ②세액계산 처리 및 출력 버튼, ③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자택자금, 기부금, 퇴직연금/저축, 신용카드, 종전근무지, 공제결과 TAB으로 구성됨

☞ 정보알장 > 급여 > 소득공제신고서작성 (GM\_GY\_7032.xml) ★

• 정산년도 2013 • 정산구분  연말정산  퇴직정산 • 사번 3 • 성명 김 🔍 조회

---

① **소득자인적사항** • 2013년 귀속 소득공제신고서 작성기간 >>2014-01-02 09:00 ~ 2014-01-02 22:40 ➡ 처리

사번/성명	3 김	주민등록번호	*****	재직상태(퇴직일자)	재직()
소속		직종	일반직	직급	
국적	한국	거주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거주자 <input type="radio"/> 비거주자	거주국가	한국
세대주여부	<input type="radio"/> 세대주 <input checked="" type="radio"/> 세대원	인적공제변동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전년과동일 <input type="radio"/> 변동		
주소	446572 경기				

---

② ➡ 세액계산처리 ➡ 소득공제신고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저축명세서 ➡ 홈세액/주택임차명세서 ➡ 소득공제신고 확정/취소

---

③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퇴직연금/저축 신용카드 종전근무지 공제결과

☑ 대상자 ➡ 신규 ➡ 처리

총 건수: 1

순번	주인등록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기본 공제 자	경로 우대 인	출산 입양 이하	한 부모 다자 녀	구분	보험료 (건강 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1		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세청	0	0	0	0	0	0	0	0	0	0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1,793,060	0	0	0	0	0	0	0	0	0

I.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II.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III. 소득공제신고서 화면구성

**IV.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방법**

V. Q & A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소득자인적사항

① 소득자인적사항 ① 2013년 귀속 소득공제신고서 작성기간 >> 2014-01-02 09:00 ~ 2014-01-02 22:40 ③ 처리

사번/성명		주민등록번호	-*****	재직상태(퇴직일자)	재직()
소속		직종	일반직	직급	일반직 6급
국적	한국	거주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거주자 <input type="radio"/> 비거주자	거주국가	한국
세대주여부	<input type="radio"/> 세대주 ④ <input checked="" type="radio"/> 세대원	인적공제변동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전년과동일 <input type="radio"/> 변동		
주소	446572	경기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29번서길 10-6 (연남동)			

✓ 소득자인적사항 TITLE 우측에 ①과 같이 **소득공제신고서 작성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 기본 소속 정보를 display 및 ②의 **국적, 거주구분, 거주국가, 세대주여부, 인적공제변동여부, 주소** 수정이 가능함

✓ ②의 정보를 변경하고 반드시 ③의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 ④의 버튼을 클릭하면 ⑤의 '우편번호 조회' 팝업이 열림.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 현재 지번으로 되어 있는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인적공제대상자 또는 주소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변동여부를 변동으로 설정후 ③의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동일한 주소에 대한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변경된 사항은 전년과 동일함.

\*인적공제가 변동되었을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담당자에게 제출

⑤ 우편번호 조회

시도 전체 도로명 연남

도로명 지번주소

총건수 : 332

순번	우편번호	새 주소
322	446-52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29번서길 10-4 (연남동)
323	446-52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29번서길 10-5 (연남동)
324	446-52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29번서길 10-6 (연남동)
325	446-52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29번서길 16-4 (연남동)
326	446-52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29번서길 16-6 (연남동)
327	446-52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29번서길 16-7 (연남동)
328	446-52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29번서길 18 (연남동)
329	446-52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29번서길 19 (연남동)
330	446-52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29번서길 19-1 (연남동)
331	446-52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29번서길 22 (연남동)
332	446-52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29번서길 40 (연남동)

선택 닫기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인적공제

- ✓ ①의 인적공제 TAB을 선택한다.
- ✓ ②의 신규버튼을 클릭하여 ③의 대상자 그리드에 로우를 추가한다.
- ✓ ③의 관계코드를 선택시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
- ✓ ③의 관계코드를 선택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 ③번 대상자 그리드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코드, 내외국인, 기본공제, 부녀자, 장애인, 한부모공제 등을 입력 및 선택한 후 ②의 '처리'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처리하며 경로우대,출산입양,6세이하, 다자녀공제는 저장처리시 자동 설정되어 저장처리된다.

### ✓기본공제 대상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1993.1.1 이후 출생)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1996.1.1 이후 출생)

\* 장애인공제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종전근무지

종전근무지 ① ②

출 건수: 1

③	순번	<input type="checkbox"/>	사업자 등록번호	근무지명	근무 시작일자	근무 종료일자	급여	상여금	국민 연금	사학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특세	영수증 제출여부
	1	<input type="checkbox"/>	1234123412	수원과학대	2013-01-10	2013-01-30	1,200,000	0	120,000	0	0	12,000	10,000	1,000	0	<input type="checkbox"/>

-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이 존재하여 합산해야하는 경우 ①의 '종전근무지' TAB을 선택한다.
- ✓ ②의 신규버튼을 클릭하여 ③의 종전근무지 그리드에 로우를 추가한다.
- ✓ ③에 종전근무지의 사업자등록번호, 근무지명, 근무시작일자, 근무종료일자, 급여, 상여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등을 입력한후 ②의 '처리'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처리한다.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연금보험료

<span>→ 세액계산처리</span> <span>→ 소득공제신고서</span> <span>→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span> <span>→ 연금저축명세서</span> <span>→ 월세액/주택임차명세서</span> <span>→ 소득공제신고 확정/취소</span>										
인적공제	<b>연금보험료</b>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퇴직연금/저축	신용카드	종전근무지	공제결과
②	연금보험료	지출내역	지출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0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거주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전액공제 (사용자부담금 제외)						
		주(현)근무지	0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	종(전)근무지	0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전액 공제						
		주(현)근무지	3,829,260							
	연금계좌	퇴직연금	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연금저축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400만원 한도						
		연금저축	0							
계			3,829,260							

- ✓ ①의 '연금보험료' TAB을 선택한다.
- ✓ ②에 연금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외의 연금보험료, 연금계좌) 정보가 조회된다.
- ✓ 연금보험료의 경우 대상자 생성 및 종전근무지 정보 생성시 납부(지출)금액이 결정된다.
- ✓ 연금계좌의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은 퇴직연금/저축 TAB에서 입력한다.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보장성보험료(1/2)

③ 보험료		지출내역	지출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②	<input type="button" value="보장성보험료입력"/>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0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포함)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전액공제)
		주(현)근무지	1,799,060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12,000	0	근로자가 부담하는 본인의 고용보험료(전액공제)
		주(현)근무지	0		
	일반보장성보험		0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한도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0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의 보험료 (한도 100만원)	
	계		1,811,060		

- ✓ ①의 '보험료' TAB을 선택하면 ②에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일반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정보가 조회된다.
- ✓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연말정산대상자 생성 및 종전근무지 정보 생성시 납부(지출)액이 결정된다.
- ✓ 보장성보험을 입력하기 위해 ③번을 클릭하면 보장성보험료입력창이 열린다.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보장성보험료(2/2)

The screenshot shows the '보장성보험료' (Guaranteed Insurance Premium) section of the tax reporting system. The interface includes a navigation menu at the top with options like '세액계산처리', '소득공제신고서', and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The main area is divided into two parts: a summary table on the left and a detailed input form on the right.

**Summary Table (Left):**

보험료	지출내역	지출액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0
	주(현)근무지	1,799,060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12,000
	주(현)근무지	0
일반보장성보험		1,200,000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0
계		3,011,060

**Input Form (Right):**

The input form is titled '보장성 보험료 입력' (Guaranteed Insurance Premium Input). It includes a '사번/성명' (Employee ID/Name) field and a '닫기' (Close) button. Below this, there are two tables for '공제대상자' (Deduction Recipient) and '보장성보험료' (Guaranteed Insurance Premium).

**공제대상자 (Deduction Recipient):**

순번	성명
1	[Redacted]

**보장성보험료 (Guaranteed Insurance Premium):**

순번	보험유형	국세청신고구분	금액
1	보장성보험	국세청	1,200,000

- ✓ ③번의 보장성보험료 입력버튼을 클릭하면 ⑤번의 보장성보험료 입력 창이 열린다.
- ✓ ⑥번의 공제대상자를 선택한후 ⑦번의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⑧번에 신규 로우가 추가된다.
- ✓ ⑧번에 보험유형(보장성보험, 장애인보장성보험), 국세청신고구분, 금액을 입력 및 선택한후 ⑦번의 '처리'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처리한다.
- ✓ ⑨번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장성보험료입력창이 닫히면서 ①번 보험료 TAB이 재조회되며, 입력한 금액이 조회된다.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의료비(1/2)

의료비	지출내역	지출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input type="button" value="의료비입력"/>	1. 본인 2. 65세이상자 3. 장애인의료비	0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 장애인, 65세이상인 자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
	4 그밖의공제대상자 의료비	0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중 1,2,3을 제외한 금액
	계(1+2+3+4)	0	
	④ 총급여액의 3% 금액	1,864,950	

\*본인 총급여액의 3%를 확인하시고 의료비 사용액이 3%미만이면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입력하지 마십시오.  
 \*의료비공제 금액은 총급여를 3%초과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영수증 첨부시 별도 이면지(A4)를 이용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 출력순서로, 계단식(아래에서 위로)으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 ①번의 '의료비' TAB을 선택하면 ②번에 의료비가 조회된다.

✓ ④번의 총급여액의 3% 금액을 확인하여 의료비 총 사용액이 총급여액 3%금액 미만이면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입력을 아니한다. 3% 이상일 경우 ③번의 의료비입력 버튼을 클릭한다.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의료비(2/2)

① 소득공제신고서 > ② 의료비 > ③ 의료비입력 > ④ 총급여액의 3% 금액 > ⑤ 의료비 입력창 > ⑥ 공제대상자 > ⑦ 신규 > ⑧ 의료비 > ⑨ 닫기

의료비	지출내역	지출액
③ 의료비입력	1. 본인 2. 65세이상자 3. 장애인의료비	1,123,440
	4. 그밖의공제대상자 의료비	0
	계(1+2+3+4)	1,123,440
	④ 총급여액의 3% 금액	1,864,950

순번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의료건수	지출금액	의료관계	의료증빙구분
1		1234123412	병원	5	1,123,440	본인	국세청자료

\*본인 총급여액의 3%를 확인하시고 의료비 사용액이 3%미만이면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의료비공제 금액은 총급여를 3%초과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영수증 첨부시 별도 이면지(A4)를 이용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 출력순서로, 계단식(아래에서 위로)으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 ✓ ③번 의료비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⑤번의 의료비입력창이 열린다.
- ✓ ⑥번의 공제대상자를 선택한후 ⑦번의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⑧번의 의료비 그리드에 신규로우가 추가된다.
- ✓ ⑧번 그리드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의료건수, 지출금액, 의료관계, 의료증빙구분 등을 입력한 후 ⑦번의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처리한다.
- ✓ ⑨번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의료비입력창이 닫히면서 ①번의 의료비 TAB의 정보가 재조회되며 입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교육비(1/2)

②		③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input type="button" value="교육비"/>		<input type="button" value="교육비입력"/>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포함)	0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을 위한 교육비 국외교육비
	취학전 아동	0		유치원비/학원비		0	취학전 아동(학원, 체육시설)교육비 근로자본인을 위한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초/중/고등학교	0		공납금		0	공제한도 본인:전액 취학전아동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대학원불포함)	0		공납금		0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
	장애인	0		특수교육비		0	
				계		0	

- ✓ ①번의 '교육비' TAB을 선택하면 ②번에 교육비가 조회된다.
- ✓ 소득자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교육비를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그외 대학생의 교육비는 대학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 ✓ ③번을 클릭하여 교육비입력창을 띄운다.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교육비(2/2)

②	③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input type="button" value="교육비입력"/>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포함)	0
	취학전 아동	0	유치원비/학원비	0
	초/중/고등학교	0	공납금	0
	대학생(대학원불포함)	0	공납금	0
	장애인	0	특수교육비	0
			계	0

THE UNIVERSITY OF SUWON -- 웹 페이지 대화 상자

http://info.suwon.ac.kr/webquare/webquare.jsp?w2xPath=/news/gm/gu/GM\_GY\_7110.xml&eno=V8AMwASADIAMQzADUAQQ%3D%3DE

사번/성명   ⑧

교육비 입력

공제대상자 총건수: 2 ⑤

순번	성명
1	홍길동
2	

교육비 총건수: 0 ⑦

순번	교육지출유형	국세청신고구분	지출금액
1	-선택- 유치원 초중고 대학 장애인	국세청	0

⑥

- ✓ ④번과 같이 교육비입력창이 열린다.
- ✓ ⑤번의 공제대상자를 선택한후 ⑥번의 '신규'버튼을 클릭하면 ⑦번의 교육비 그리드에 신규로우가 추가된다.
- ✓ ⑦번 그리드에 교육지출구분, 국세청신고구분, 지출금액을 선택 및 입력한후 ⑥번의 '처리'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처리한다.
- ✓ ⑧번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비입력창이 닫히면서 ①번 교육비 TAB의 정보가 재조회되며 입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주택자금(1/4)

주택자금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input checked="" type="button" value="월세/주택임차"/> <input checked="" type="button" value="장기주택입력"/>	<input checked="" type="button" value="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거주자)	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자 (단, 거주자간 차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자) 원리금상환액의 40%공제
		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	0	
	월세액	지출액	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해당 과세기간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단독 세대주포함) 월세액의 40%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5년미만(600만원한도)	0	03.12.31 이전 차입분 상환기간 10년이상 15년미만
		15-29년(1,000만원한도)	0	12.1.1 이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1,500만원한도)	0	12.1.1 이전 차입분으로 상환기간 30년 이상/ 12.1.1 이후 신규차입분 상환기간 15년이상
		고정금리,비거치 상환대출 (1500만원한도)	0	12.1.1 이후 차입분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기타대출(500만원한도)	0	11.12.31 이전 차입분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월세/주택임차 버튼을 Click하여 월세액 및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거주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입력 버튼을 Click하여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월세액공제금액+주택마련저축납입액공제금액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①번의 '주택자금' TAB을 선택하면 ②번에 주택자금이 조회된다.
- ✓ ③번의 '월세/주택임차' 버튼을 클릭하면 월세/주택임차 입력창이 열린다. 단 세대주가 아니면 입력할 수 없다.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주택자금(2/4)

주택자금	지출내역	원리금상환액
<input type="button" value="월세/주택임차"/> <input type="button" value="장기주택입력"/>	<input type="button" value="주택임차차입금"/>  <input type="button" value="월세액"/> <input type="button" value="장기주택저당차입금"/>	<input type="button" value="원리금상환액(거주자)-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input type="button" value="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거주자)-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input type="button" value="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거주자)-임대차 계약내용"/>

\*월세/주택임차 버튼을 Click하여 월세액 및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입력  
 \*장기주택입력 버튼을 Click하여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입력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월세액공제금액+주택관련저축납입액공제금액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⑤번의 월세/주택임차 입력창에서 ⑥번의 '신규'버튼을 클릭하면 ⑦번 월세액 그리드에 신규로우가 추가된다. 단, 총급여가 5천만원 이상일때는 월세액을 입력할 수 없다.
- ✓ ⑦번 월세액 그리드에 임대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계약시작일자, 계약종료일자, 월세액을 입력한후 ⑥번의 '처리'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처리한다.
- ✓ ⑧번의 '신규'버튼을 클릭하면 ⑨번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거주자)-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그리드에 신규로우가 추가된다.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주택자금(3/4)

⇒ 세액계산처리   ⇒ 소득공제신고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저축명세서   ⇒ 월세액/주택임차명세서   ⇒ 소득공제신고 확정/취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① 주택자금**   기부금   퇴직연금/저축   신용카드   종전근무지   공제결과

주택자금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② 월세/주택임차 ② 장기주택입력	③ 주택임차차입금 ④ 월세액 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상환	원리금상환	
		원리금상환	원리금상환	
		월세액	월세액	
		15년미만(1)	15년미만(1)	
		15-29년(1)	15-29년(1)	
		30년이상(1)	30년이상(1)	
		고정금리,비	고정금리,비	
		기타대출	기타대출	

\*월세/주택임차 버튼을 Click하여 월세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입력 버튼을 Click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 월세액 공제금액 + 주

- ✓ ⑨ 번 그리드에 대주, 주민등록번호, 계약시작일자, 계약종료일자, 차입금이자율, 원리금, 이자, 합계금액을 입력한 후 ⑧ 번의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처리한다.
- ✓ ⑩ 번의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⑪ 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거주자)-임대차 계약내용 그리드에 신규로우를 추가한다.
- ✓ ⑪ 번 그리드에 임대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계약시작일자, 계약종료일자, 전세보증금을 입력한 후 ⑩ 번의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처리한다.
- ✓ ⑫ 번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월세/주택임차입력창이 닫히면서 ①의 '주택자금' TAB의 정보가 재조회되며 반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주택자금(4/4)

주택자금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input type="button" value="월세/주택임차"/> <input type="button" value="장기주택입력"/>	<input type="button" value="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거주자)	1,342,000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p>사면/생명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닫기"/> 16</p> <p>장기주택 입력</p> <p>주택임차(대출기관)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input type="button" value="신규"/> <input type="button" value="처리"/> 14</p> <p>총건수: 0 <input type="button" value="15"/></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번</th> <th>공제항목</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td>1</td><td>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td><td>0</td></tr> <tr><td>2</td><td>15년미만(600만원 한도)</td><td>0</td></tr> <tr><td>3</td><td>15-29년(1000만원 한도)</td><td>0</td></tr> <tr><td>4</td><td>30년이상(1500만원 한도)</td><td>0</td></tr> <tr><td>5</td><td>고정금리,비거치 상환대출(500만원 한도)</td><td>0</td></tr> <tr><td>6</td><td>기타대출(1500만원 한도)</td><td>0</td></tr> </tbody> </table> </div>	순번	공제항목	금액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	0	2	15년미만(600만원 한도)	0	3	15-29년(1000만원 한도)	0	4	30년이상(1500만원 한도)	0	5	고정금리,비거치 상환대출(500만원 한도)	0	6	기타대출(1500만원 한도)	0
		순번	공제항목		금액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	0																						
	2	15년미만(600만원 한도)	0																						
	3	15-29년(1000만원 한도)	0																						
	4	30년이상(1500만원 한도)	0																						
	5	고정금리,비거치 상환대출(500만원 한도)	0																						
6	기타대출(1500만원 한도)	0																							
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	0																								
월세액	지출액	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5년미만(600만원한도)	0																							
	15-29년(1,000만원한도)	0																							
	30년이상(1,500만원한도)	0																							
	고정금리,비거치 상환대출 (1500만원한도)	0																							
기타대출(500만원한도)	0																								

\*월세/주택임차 버튼을 Click하여 월세액 및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거주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입력 버튼을 Click하여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월세액공제금액+주택마련저축납입액공제금액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④번의 '장기주택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⑬번의 장기주택입력창이 열린다.
- ✓ ⑭번의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⑮번 장기주택 그리드에 신규 로우가 추가된다.
- ✓ 공제항목 및 금액을 입력 및 선택한 후 ⑭번의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처리한다.
- ✓ 16'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⑬번의 장기주택입력창이 닫히면서 ①번 '주택자금' TAB이 재조회되며 입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퇴직연금/저축(1/2)

②		③	지출내역	지출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연금계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과학기술인공제회	0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연금저축	0		근로자본인명의로 2001.1.1 이후에 가입하여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484,800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해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1,200,000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120만원 이하에 한함)	
	근로자주택마련저축	1,000,000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0		저축가입자가 금융회사 등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에 한함)	

- ✓ ①번의 '퇴직연금/저축' TAB을 선택하면 ②번에 퇴직연금 및 저축정보가 조회된다.
- ✓ ③번의 '퇴직연금/저축'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연금/저축 입력창이 열린다.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퇴직연금/저축(2/2)

세액계산처리  
  소득공제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저축명세서  
  월세액/주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퇴직연금/저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퇴직연금/저축입력	지출내역	지출액
연금계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0

②

- ✓④ 번 퇴직연금/저축입력창에서 ⑤ 번 '신규'버튼을 클릭하면 ⑥ 퇴직연금 그리드에 신규로우가 추가된다.
- ✓⑥ 번 그리드에 퇴직연금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불입금액을 입력한후 ⑤ 번의 '처리'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처리한다.
- ✓⑦ 번의 '신규'버튼을 클릭하여 ⑧ 번 연금저축 그리드에 신규로우를 추가한다. |
- ✓⑧ 번 그리드에 연금저축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불입금액을 선택 및 입력한 후 ⑦ 번의 '처리'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처리한다.
- ✓⑨ 번의 '신규'버튼을 클릭하여 ⑩ 번 주택마련저축 그리드에 신규로우를 추가한다. |
- ✓⑩ 번 그리드에 주택마련저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불입금액을 선택 및 입력한 후 ⑦ 번의 '처리'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처리한다.
- ✓⑪ 번 닫기버튼을 클릭하면 퇴직연금/저축입력창이 닫히고 ① 번 퇴직연금/저축 TAB의 정보가 재조회된다.

④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기부금(1/2)

기부금	지출내역	지출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input type="button" value="기부금입력"/>	①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제외)	0	근로소득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③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	0	정치자금기부금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②법정기부금	0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세액공제제외)
	③특례기부금	0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법정기부금공제금액)*50%
	④공익신탁기부금	0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법정기부금공제금액-특례기부금공제금액)*50%
	⑤우리사주조합기부금	0	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소득공제금액-법정기부금공제금액-특례기부금공제금액-공익신탁기부금공제금액)*30%
	⑥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0	한도금액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⑤)*30%
	⑦종교단체지정기부금	0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⑤)*10%+ MIN[(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⑤) *20%,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 ✓①번의 '기부금' TAB을 선택한다.
- ✓②번에 기부금 정보가 조회된다.
- ✓③번의 '기부금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기부금입력창이 열린다..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기부금(2/2)

→ 세액계산처리 → 소득공제신고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저축명세서 → 월세액/주택임차명세서 → 소득공제신고 확정/취소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① | **기부금** ④ | 퇴직연금/저축 | 신용카드 | 종전근무지 | 공제결과

기부금	지출내역	지출액
② 기부금입력	①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제외)	1,200,000
③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	100,000
	②법정기부금	0
	③특례기부금	0
	④공익신탁기부금	0
	⑤우리사주조합기부금	0
	⑥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0
	⑦종교단체지정기부금	50,000

⑤ 공제대상자  
 출건수: 2  

순번	성명
1	
2	홍길동

⑥ 기부금 입력  
 ⑦ 기부금  

순번	기부금	금액
1		100,000

⑧ 당해년도 기부금  
 출건수: 1  

순번	기부유형	국세청신고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단체명	기부내용	기부관계	기부년도	기부건수	기부금
1	정치자금기부금	국세청	1234123412	공헌	거주자본인	4	2012	1	1,200,000

⑩ 이월 기부금  
 출건수: 1  

순번	기부유형	국세청신고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단체명	기부내용	기부관계	기부년도	기부건수	기부금	전년도까지 공제된금액
1	종교단체지정	국세청	214321432	교회	공헌	거주자본	2012	1	150,000	100,000

✓④번의 기부금입력창에서 ⑤의 공제대상자를 선택하고 정치자금기부금이 존재할시에 ⑥의 '신규'버튼을 클릭하여 ⑦의 신규로우를 추가하여 10만원 이하 금액까지는 이곳에 입력한다. 10만원 초과분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⑧번의 '신규'버튼을 클릭하여 ⑨번의 당해년도기부금에 입력하도록 한다. 그외 법정, 특례, 공익신탁, 우리사주조합, 종교단체외, 종교단체 기부금을 선택하여 입력한 후 ⑧의 '처리'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처리한다.

✓이월기부금이 존재시 ⑩번의 '신규'버튼을 클릭하여 ⑪번의 이월기부금 그리드에 신규로우를 추가한다. 이월기부금 입력시에는 기부년도, 기부한금액, 전년도까지 공제된금액을 파악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⑫번의 '닫기'버튼을 클릭하면 기부금입력창이 닫히며 ①번 기부금TAB이 재조회된다.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신용카드 등(1/2)

신용카드등	지출내역	지출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input type="button" value="신용카드등입력"/>	①신용카드(전통시장제외)	0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②현금영수증(전통시장제외)	0	현금영수증(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는 것을 포함)
	③직불카드등(전통시장제외)	0	직불카드, 실지명의를 확인되는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한 금액
	④전통시장사용분	0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 및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⑤대중교통이용분	0	대중교통을 신용카드, 직불 및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계(①+②+③+④+⑤)	0	

그밖의지출내역(소기업소상공인/투자조합출자공제)

총 건수: 0

순번	공제항목	금액
<input type="checkbox"/>		

- ✓ ①번의 '신용카드' TAB을 선택하면 ②번에 신용카드 등의 정보가 조회된다.
- ✓ ③번의 '신용카드등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신용카드등입력창이 열린다.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신용카드 등(2/2)

→ 세액계산처리 → 소득공제신고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저축명세서 → 월세액/주택임차명세서 → 소득공제신고 확정/취소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 기부금 | 퇴직연금/저축 | **신용카드** | 종전근무지 | 공제결과

**②** 신용카드등 **③** 지출내역 | 지출액

신용카드등입력	①신용카드(전통시장제외)	11,200,000
	②현금영수증(전통시장제외)	1,200,000
	③직불카드등(전통시장제외)	4,000,000
	④전통시장사용분	112,340
	⑤대중교통이용분	550,000
	계(①+②+③+④+⑤)	17,062,340

그밖의지출내역(소기업소상공인/투자조합출자공제)  
 총 건수: 0

순번	공제항목
<input type="checkbox"/>	

**④** 신용카드등 입력창에서 **⑤**의 공제대상자를 선택한후 **⑥**의 '신규'버튼을 클릭하면 **⑦**의 신용카드등 그리드에 신규로우가 추가된다.

**⑦**의 그리드에 신용카드등유형, 국세청신고구분, 금액을 선택 및 입력한후 **⑥**의 '처리'버튼을 클릭하면 저장처리된다.

**⑧**의 '닫기'버튼을 클릭하면 **④**의 신용카드등 입력창이 닫히면서 **①**의 '신용카드' TAB이 재조회되면 입력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 ④번의 신용카드등 입력창에서 ⑤번의 공제대상자를 선택한후 ⑥번의 '신규'버튼을 클릭하면 ⑦번의 신용카드등 그리드에 신규로우가 추가된다.
- ✓ ⑦번의 그리드에 신용카드등유형, 국세청신고구분, 금액을 선택 및 입력한후 ⑥번의 '처리'버튼을 클릭하면 저장처리된다.
- ✓ ⑧번의 '닫기'버튼을 클릭하면 ④번의 신용카드등 입력창이 닫히면서 ①번의 '신용카드' TAB이 재조회되면 입력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그밖의 지출내역(소기업소상공인/투자조합출자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퇴직연금/저축	신용카드	종전근무지	공제결과
신용카드등		지출내역		지출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 신용카드등입력		①신용카드(전통시장제외)	11,200,000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②현금영수증(전통시장제외)	1,200,000	현금영수증(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는 것을 포함)						
		③직불카드등(전통시장제외)	4,000,000	직불카드,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한 금액						
		④전통시장사용분	112,340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 및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⑤대중교통이용분	550,000	대중교통을 신용카드, 직불 및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계(①+②+③+④+⑤)	17,062,340							
<b>■ 그밖의지출내역(소기업소상공인/투자조합출자공제)</b> <span style="float: right;">①</span> <span style="float: right;">➔ 신규</span> <span style="float: right;">➔ 처리</span>										
총 건수: 0 <span style="float: right;">②</span>										
순번		공제항목	금액							
1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0							
2	+	- 선택 -	0							
		2011/투자조합출자공제(10%)								
		2012/투자조합출자공제(10%)								
		2012/투자조합출자공제(20%)								
		2013/투자조합출자공제(10%)								
		2013/투자조합출자공제(30%)								

- ✓ 그밖에 지출내역이 존재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공제 등) ①번의 '신규'버튼을 클릭하면 ②번의 그밖의 지출내역 그리드에 신규로우가 추가된다.
- ✓ ②번 그리드에 공제항목, 금액을 선택 및 입력한후 ①번의 '처리'버튼을 클릭하면 저장처리된다.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공제결과(세액계산전)

③ **세액계산처리** | 소득공제신고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저축명세서 | 월세액/주택임차명세서 | 소득공제신고 확정/취소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 기부금 | 퇴직연금/저축 | 신용카드 | 종전근무지 | **공제결과** ①

② **공제결과**

순번	공제분류	공제상세분류	공제항목	지출금액	공제금액
1		종전	급여	1,200,000	
2		주현	급여	1,100,000	
3		종전	상여금	0	
4		주현	상여금	1,000,000	
5	기본공제	기본공제	본인공제		
6			배우자공제		
7			부양가족공제		
8	추가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공제		
9			장애인공제		
1. 총급여(비과세제외)		1,100,000	9. 차감소득금액	0	
2. 근로소득공제금액		0	10. 그밖의 소득공제	0	결정 0
3. 근로소득금액		0	11.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0	종전납부 10,000
4. 인적공제		0	12. 종합소득과세표준	0	주현납부 1,000
5. 추가공제		0	13. 근로소득산출세액	0	차감징수 0
6. 연금보험료공제		0	14. 세액감면합계금액	0	
7. 특별공제		0	15. 세액공제합계금액	0	
8. 표준공제		0	16. 결정소득세	0	

✓ ①번의 '공제결과' TAB을 선택하면 ②번에 공제결과가 조회가 되며, 직전TAB까지 입력한 공제항목별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③번의 '세액계산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위의 입력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계산처리를 하면 다음페이지처럼 공제항목별 공제금액과 차감징수세액의 결정된다.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공제결과(세액계산후)

③ 세액계산처리 소득공제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저축명세서 월세액/주택임차명세서 소득공제신고 확정/취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퇴직연금/저축 신용카드 종전근무지 **공제결과** ①

② 공제결과

순번	공제분류	공제상세분류	공제항목	지출금액	공제금액
1		종전	급여	2,000	
2		주현	급여	0	
3		종전	상여금	0	
4		주현	상여금	0	
5	기본공제	기본공제	본인공제		1,500,000
6			배우자공제		
7			부양가족공제		1,500,000
8	추가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공제		
9			장애인공제		

1. 출급여(비과세제외)	5,000	9. 차감소득금액	9,630	소득세	주인세	농특세	합계
2. 근로소득공제금액	8,050	10. 그밖의소득공제	1,270	결정	0,300	0	3,310
3. 근로소득금액	6,730	11. 특별공제종합한도초과액	0	종전납부	10,000	1,000	11,000
4. 인적공제	1,000	12. 종합소득과세표준	8,303	주현납부	1,000	0	2,000
5. 추가공제	0	13. 근로소득산출세액	3,170	차감징수	-2,173,170	-217,290	-2,390,460
6. 연금보험료공제	4,260	14. 세액감면합계금액	0				
7. 특별공제	17,300	15. 세액공제합계금액	9,930				
8. 표준공제	0	16. 결정소득세	1,110				

- ✓ 인적공제 ~ 종전근무지까지 공제항목에 수정된 사항이 있을시에 ③번의 '세액계산처리'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세액을 재계산 처리하여 ②번에 재계산된 공제결과를 보여준다.
- ✓ 결정된 차감징수금액은 담당자의 확인 및 국세청 프로그램 검증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 소득공제신고 확정/취소

☑ 소득자인적사항    • 2013년 귀속 소득공제신고서 작성기간 >> 2014-01-02 09:00 ~ 2014-01-02 22:40    ⇨ 처리

사번/성명	주인등록번호	재직상태(회직일자)	재직()
소속	직종	직급	일반직 6급
국적	거주구분	거주국가	한국
세대주여부	인적공제변동여부		
주소			

⇨ 세액계산처리    ⇨ 소득공제신고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저축명세서    ⇨ 월세액/주택임차명세서    ⇨ **소득공제신고 확정/취소** ①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퇴직연금/저축    신용카드    종전근무지    **공제결과**

☑ 공제결과

순번	공제분류	공제상세분류	공제항목	지출금액	공제금액
28	특별공제	의료비	경로의료비		
29			장애인의료비		
30			기타의료비		
31			의료비합계	1,123,440	0
32		교육비	본인교육비	8,000,000	8,000,000
33			취학전아동교육비		
34			초중고교육비		
35			대학교육비		
36			장애인교육비		

1. 출급여(비과세제외)	5,000	9. 차감소득금액	1,630	소득세	주인세	농특세	합계
2. 근로소득공제금액	3,250	10. 그밖의 소득공제	1,821,127	결정	240,730	0	2,648,091
3. 근로소득금액	3,750	11.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0	종전납부	1,000	0	11,000
4. 인적공제	3,000,000	12. 종합소득과세표준	8,503	주헌납부	4,570,540	457,020	5,027,560

- ✓ ①번의 '소득공제신고 확정/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확정처리 되어 출력만 가능하고 수정은 할수 없다.
- ✓ 소득공제신고 확정 상태에서 ①번의 '소득공제신고 확정/취소' 버튼을 다시 클릭하면 취소처리 되어 수정이 가능하다.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소득공제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저축명세서, 월세액/주택임차명세서 등 출력



1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공제신고서)의 소득세 예정 반영 상황

구분	연월	세액	세율	세율	세율
1월	1월	1,000	10%	10%	10%
2월	2월	1,000	10%	10%	10%
3월	3월	1,000	10%	10%	10%
4월	4월	1,000	10%	10%	10%
5월	5월	1,000	10%	10%	10%
6월	6월	1,000	10%	10%	10%
7월	7월	1,000	10%	10%	10%
8월	8월	1,000	10%	10%	10%
9월	9월	1,000	10%	10%	10%
10월	10월	1,000	10%	10%	10%
11월	11월	1,000	10%	10%	10%
12월	12월	1,000	10%	10%	10%
합계	연간	12,000	10%	10%	10%

2

구분	연월	세액	세율	세율	세율
1월	1월	1,000	10%	10%	10%
2월	2월	1,000	10%	10%	10%
3월	3월	1,000	10%	10%	10%
4월	4월	1,000	10%	10%	10%
5월	5월	1,000	10%	10%	10%
6월	6월	1,000	10%	10%	10%
7월	7월	1,000	10%	10%	10%
8월	8월	1,000	10%	10%	10%
9월	9월	1,000	10%	10%	10%
10월	10월	1,000	10%	10%	10%
11월	11월	1,000	10%	10%	10%
12월	12월	1,000	10%	10%	10%
합계	연간	12,000	10%	10%	10%

3

구분	연월	세액	세율	세율	세율
1월	1월	1,000	10%	10%	10%
2월	2월	1,000	10%	10%	10%
3월	3월	1,000	10%	10%	10%
4월	4월	1,000	10%	10%	10%
5월	5월	1,000	10%	10%	10%
6월	6월	1,000	10%	10%	10%
7월	7월	1,000	10%	10%	10%
8월	8월	1,000	10%	10%	10%
9월	9월	1,000	10%	10%	10%
10월	10월	1,000	10%	10%	10%
11월	11월	1,000	10%	10%	10%
12월	12월	1,000	10%	10%	10%
합계	연간	12,000	10%	10%	10%

4

구분	연월	세액	세율	세율	세율
1월	1월	1,000	10%	10%	10%
2월	2월	1,000	10%	10%	10%
3월	3월	1,000	10%	10%	10%
4월	4월	1,000	10%	10%	10%
5월	5월	1,000	10%	10%	10%
6월	6월	1,000	10%	10%	10%
7월	7월	1,000	10%	10%	10%
8월	8월	1,000	10%	10%	10%
9월	9월	1,000	10%	10%	10%
10월	10월	1,000	10%	10%	10%
11월	11월	1,000	10%	10%	10%
12월	12월	1,000	10%	10%	10%
합계	연간	12,000	10%	10%	10%

5

구분	연월	세액	세율	세율	세율
1월	1월	1,000	10%	10%	10%
2월	2월	1,000	10%	10%	10%
3월	3월	1,000	10%	10%	10%
4월	4월	1,000	10%	10%	10%
5월	5월	1,000	10%	10%	10%
6월	6월	1,000	10%	10%	10%
7월	7월	1,000	10%	10%	10%
8월	8월	1,000	10%	10%	10%
9월	9월	1,000	10%	10%	10%
10월	10월	1,000	10%	10%	10%
11월	11월	1,000	10%	10%	10%
12월	12월	1,000	10%	10%	10%
합계	연간	12,000	10%	10%	10%

6

구분	연월	세액	세율	세율	세율
1월	1월	1,000	10%	10%	10%
2월	2월	1,000	10%	10%	10%
3월	3월	1,000	10%	10%	10%
4월	4월	1,000	10%	10%	10%
5월	5월	1,000	10%	10%	10%
6월	6월	1,000	10%	10%	10%
7월	7월	1,000	10%	10%	10%
8월	8월	1,000	10%	10%	10%
9월	9월	1,000	10%	10%	10%
10월	10월	1,000	10%	10%	10%
11월	11월	1,000	10%	10%	10%
12월	12월	1,000	10%	10%	10%
합계	연간	12,000	10%	10%	10%

7

구분	연월	세액	세율	세율	세율
1월	1월	1,000	10%	10%	10%
2월	2월	1,000	10%	10%	10%
3월	3월	1,000	10%	10%	10%
4월	4월	1,000	10%	10%	10%
5월	5월	1,000	10%	10%	10%
6월	6월	1,000	10%	10%	10%
7월	7월	1,000	10%	10%	10%
8월	8월	1,000	10%	10%	10%
9월	9월	1,000	10%	10%	10%
10월	10월	1,000	10%	10%	10%
11월	11월	1,000	10%	10%	10%
12월	12월	1,000	10%	10%	10%
합계	연간	12,000	10%	10%	10%

8

구분	연월	세액	세율	세율	세율
1월	1월	1,000	10%	10%	10%
2월	2월	1,000	10%	10%	10%
3월	3월	1,000	10%	10%	10%
4월	4월	1,000	10%	10%	10%
5월	5월	1,000	10%	10%	10%
6월	6월	1,000	10%	10%	10%
7월	7월	1,000	10%	10%	10%
8월	8월	1,000	10%	10%	10%
9월	9월	1,000	10%	10%	10%
10월	10월	1,000	10%	10%	10%
11월	11월	1,000	10%	10%	10%
12월	12월	1,000	10%	10%	10%
합계	연간	12,000	10%	10%	10%

**I.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II. 소득공제신고서 화면구성**

**III.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방법**

**IV. Q & A**

---

**Q & A**

